



편의점 종사자 안전을 위해 반투명 시트지 댈다.

- 규제심판부, 반투명 시트지 대안으로 ‘금연광고 부착’ 권고
- 자영업자·아르바이트생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광고 병행

□ 규제심판부*는 5.17(수) 회의를 열어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 위원(5명) : 이호영(한양대 교수, 의장), 나태준(연세대 교수), 도경현(울산대 교수), 홍수경(노무사), 안성아(추계예대 교수)

○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담배 제조·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과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은 담배소매점내 담배광고를 허용하면서 그 광고내용이 외부에 보이지 않게 전시토록 규정

○ 그러나 편의점 내외부간 시야 차단으로, 종사자들은 △범죄 노출 위험 증가 △근로환경(폐쇄감 등) 악화 등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광고 부착’으로 규제준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편의점 외벽을 가리고 있는 시트지를 제거함으로써 편의점의 개방감을 높여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 이로 인해 담배광고가 외부에 불가피하게 보이는 문제는 금연광고 효과를 통해 상쇄하자는 취지이다.

□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는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상생방안으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 담배광고규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할 경우 논의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
- 금연광고 부착방식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간 논의 및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
 - 금연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개 시안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 금연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은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 규제심판부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금년 6월 중 관련 업계가 편의점에 부착되어 있는 반투명 시트지를 금연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없도록 편의점 본사의 비용으로 금연광고를 제작·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금연광고가 실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편의점 내 담배광고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을 담배제조사 등 관련 업계에 촉구함.
-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 청소년 흡연 예방, WHO 협약 이행 차원에서 소매점 내 담배광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붙임> 1. 금연광고 부착 방안
 2. 담배 관련 통계
 3. 담배광고 관련 규정. 끝.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정동혁 (044-200-2563)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배준서 (044-200-2557)



□ 광고 규격

- 점포 규모 및 내부 광고물의 높이 등 고려하여 소매점 내부 상판 담배광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크기

□ 부착 위치

- 성인 눈높이 위치에, 외부에서 보았을 때 편의점내 담배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 △편광필름 부착 △LED 광고물 밝기 조정 △판매대 위치 변경 등 자율 조치 권장

□ 광고 내용

- 청소년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보건복지부가 시안 제공)
 - ※ 복지부가 제공하는 복수의 시안 중 편의점 본사별로 선택

□ 비용 부담

-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비용 부담

붙임2

담배 관련 통계

□ 국내 흡연을 추이

연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청소년(%)	9.7	9.2	7.8	6.3	6.4	6.7	6.7	4.4	4.5
성인(%)	24.1	24.2	22.6	23.9	22.3	22.4	21.5	20.6	19.3

□ 편의점 내 범죄 발생 현황(경찰청, 단위:건)

구분	'17	'18	'19	'20	'21
계	10,780	13,548	14,355	14,697	15,489
강력범죄	306	381	360	364	273
절도범죄	4,160	5,169	5,853	5,944	6,143
폭력범죄	1,614	2,501	2,448	2,368	2,071
기타범죄	4,700	5,497	5,694	6,021	7,002

붙임3

담배광고 관련 규정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담배사업법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27조의2(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권고 규정)

제13조(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

- ①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24시간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출입문 또는 창문은 내부 또는 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④ 카운터는 배치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상시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경비실, 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등과 직접 연결된 비상 연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